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6가단118118 손해배상(자)
원 고 정○○
피 고 ○○버스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06. 10. 24.
판 결 선 고 2006. 1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11,502원 및 이에 대한 2003. 11. 11.부터 2006. 1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0,979,209원 및 이에 대한 2003. 11. 11.부터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김○○은 2003. 11. 11. 19:15경 피고 소유의 경북00자0000호 버스(이하 '사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경산시 자인면 복사 소재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자인면에서 진량 쪽으로 진행하다가 사고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1차로와 2차로의 중간 지점에 비스듬히 정지하였고, 사고 차량의 뒤편에서 주식회사 ○○창호 소유의 경북00누0000호 트럭(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문○○이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사고 차량을 피하려고 급히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해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사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로 하여금 우경골 골절, 안면부 열상, 좌흉부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해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한 점 및 피해 차량의 운전자 문○○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을 대폭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

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 5314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해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한 점 및 을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그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우경골 골절, 안면부 열상, 좌흉부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고 후 안전띠 및 조수석 앞 유리의 파손 상태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점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안전띠 미착용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

의 편의상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가. 원고의 일실수입

(1) 직업, 소득 및 가동연한

원고가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하여 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 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월수입 상당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되, 2003. 11. 11.부터 2004. 4. 30.까지의 일용노임으로는 2004. 1. 1. 발표된 2004년 상반기 노임 52,374원(조사대상기간 2003. 9. 1.부터 같은 달 30.까지), 2004. 5. 1.부터 2004. 8. 31.까지의 일용노임으로는 2004. 9. 1. 발표된 2004년 하반기 노임 52,565원(조사대상기간 2004. 5. 1.부터 같은 달 31.까지), 2004. 9. 1.부터 2005. 4. 30.까지의 일용노임으로는 2005. 1. 1. 발표된 2005년 상반기 노임 52,585원(조사대상기간 2004. 9. 1.부터 같은 달 30.까지), 2005. 5. 1.부터 2005. 8. 31.까지의 일용노임으로는 2005. 9. 1. 발표된 2005년 하반기 노임 53,090원(조사대상기간 2003. 5. 1.부터 같은 달 31.까지), 2005. 9. 1.부터 2006. 4. 30.까지의 일용노임으로는 2006. 1. 1. 발표된 2006년 상반기 노임 55,252원(조사대상기간 2004. 9. 1.부터 같은 달 30.까지)을 각 적용하며, 2006. 5. 1. 이후의 일용노임으로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5,252원을 적용한다.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안면부, 우측 하지 및 슬부, 족부에 남은 추상(醜相), 5%, 영구장해

(나) 원고는, 원고에게 남은 추상으로 인하여 1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향후 치료로 인한 개선 가능성 등에 비추어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그보다 훨씬 낮다고 다룬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

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애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바(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하지, 슬부 및 족부 뿐만 아니라 안면부에도 선상의 반흔이 남게 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24세의 미혼 여성이었던 점, ③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의 후유장해 등을 감정한 성형외과 의사 정△△은 향후 반흔교정술을 받을 경우 그 반흔의 정도가 많이 호전될 것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선상의 반흔이 남게 될 것으로 예상한 점, 그 밖에 ④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에 기재된 장해등급의 적절성, ⑤ 추상 부위에 대한 사진에 의하여 판단되는 반흔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안면부 등에 남게 된 반흔으로 인한 추상장해율은 5%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 및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복합장해율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입원기간의 종기인 2004. 3. 29.까지는 100%, 그 다음날부터 2039. 7. 9.까지는 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갑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향후치료비

원고는 향후 반흔교정술을 받고 그 비용으로 3,380,000원을 지출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06. 11. 10. 위 수술을 받고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인정 근거]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위자료

원고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하여 2,5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4,311,5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3. 11.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 만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6. 11.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중 _____